

2019년 출자·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·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
 - 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비 지원
-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
 - 관광·문화·특산품 등 지역자원의 홍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
-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
 -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과 재단 경영을 위한 운영비 및 자본형성비를 출연
-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출연
 -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
-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
 -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
-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
 -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, 인력양성,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, 기업경쟁력 제고 위해 사업비 출연

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

주관부서	기획감사실	'19년 출연예상액	5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재단법인 강원연구원(원장 육동한)
- 일반현황
 - 개 원 : '94. 9. 1.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」
 - 소 재 지 :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
 - 조 직 : 5실 6센터, 현원 43명(정원 48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19년 출연예정금액 : 50,000천원
- '19년 주요사업 내용
 - 도정 및 시·군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수행
 - 국정기조에 대응한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도 대응방안 마련(정책동향 TF 등)
 - 도 및 시·군의 주요 현안 관련 정책네트워크 사업(강원포럼 등)
 - 지역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(정책협의회, 시군코디네이터제 등)
 - 역점시책 추진,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(기획홍보TF 운영)

□ 출연 필요성

-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
- 그러나, 연구원 운영재원의 주 수입원인 수탁과제의 수입이 공개입찰 제도의 정착에 따라,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
- 이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해 수탁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
- 정책·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·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- 행정자치부

제13조(운영재원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- 「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」 - 강원도

제4조(기금)

-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"강원발전연구원 육성기금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·군 및 그 외의 출연금,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경비)

-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 도와 시·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출연액 : 50,000천원

-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(월1회), 정책 연구과제 용역 수행(1건),
- 포럼·토론회 실시(2회), 수시과제·정책메모 수행(2건),
- 정책자문창구(코디네이터) 운영

□ 기대효과

- 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활성화
- 정책변화에 선제적인 맞춤형 정책수립과 국책사업 발굴 확대
- 정책·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·연구로 군정지원 강화
-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(강원포럼 등)
- 군민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발굴

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기획감사실	'19년 출연예상액	5,5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 : (재)한국지역진흥재단 (이사장 박경배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'07. 8. 23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0조, 행자부 훈령 12호
 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
 - 조직 : 2실 1센터(현원 32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19년 출연예정금액 : 5,500천원
- '19년 주요사업 내용
 -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·조사·연구 및 자료 제공
 -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·관광·특산물 홍보 및 상설판매장·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특산물 판매 지원
 - 지역개발 자문·컨설팅·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

□ 출연 필요성

-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산물·관광·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
-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
-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관내 다양한 지역 자원·정보의 홍보채널로 활용하여 종합적 지역 진흥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자치부훈령 제48호)
-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배정기준 - 인구수
 - 인구 10만명 미만 시·군·구 : 5,500천원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지역진흥시책 기획·조사·연구 : 도·시군 기초 자료로 활용
- 관광·축제 등 지역홍보, 직거래 장터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지역특산물 체험 여행 스토리텔링 구성 등 콘텐츠화 및 온라인 홍보
 - 관광·축제 등 이벤트 조성 및 지원
 - 지역홍보센터 홍보 및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
- 중앙과 지방, 수도권과 지방, 지방 상호간 지역진흥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

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

주관부서	문화관광과	'19년 출연예상액	3,215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(이사장 김도영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12. 11. 30.(도 설립허가 2012.11.21)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
 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90-24, 진부신협 2층
 - 기 구 : 13명(이사장 1 , 이사 6, 직원 6)
 - 기본재산 : 1억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19년 출연예정금액 : 3,215,000천원
- '19년 주요사업 내용
 - 생활문화동아리 육성, 공연장 이용 단체육성, 평창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,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, 평창청소년 K-POP 교육프로그램 운영, 인문학 강좌, 평창 기획공연 및 전시, 평창송어종합공연장 개관 평화콘서트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송어문화체험관 등의 문화거점시설 운영을 통한 생활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복지 강화
-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, 문화, 교육 욕구 충족

-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필요
- 경영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실 이전, 조직확대 등의 효율적 조직관리
- 군 재정난 해소에 동참하고자 2016. 12. 28일 출연금 20억원을 한시적으로 반납함으로 인해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.

□ 출연근거

·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

제5조(재산) 재단의 재산(제3회에서 “재산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현금·현물 및 그 밖의 재산
3. 재산의 운용수익금 및 사업수입금
4. 그 밖에 수입금

제6조(출연 등)

-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금 : 3,215,000천원

- 가. 자본형성 출연금 2,000,000천원
- 나.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00,000천원
- 다. 평창문화예술재단 사업비 815,000천원
 -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100,000천원
 - 공연장이용 단체육성 50,000천원
 - 평창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60,000천원
 -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 200,000천원
 - 평창청소년 K-POP 교육프로그램 운영 70,000천원
 - 인문학 강좌 15,000천원
 - 평창 기획공연 및 전시 120,000천원
 - 평화콘서트 120,000천원
 - 평창예술제 50,000천원
 - 문화예술인의 밤 10,000천원
 -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 20,000천원

□ 출연 기대효과

- 평창군 문화예술교육, 창작지원 등을 통한 군민 문화역량 강화
- 군민 세대교류 및 일상축제, 공연 전시등으로 문화복지 실현
- 평창문화예술재단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
- 경영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실 이전, 조직확대 등의 효율적 조직관리

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

주관부서	자치행정과	‘19년 출연예상액	1,00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재단법인 평창장학회(이사장 한왕기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1990. 8. 10.
 - 설립근거 :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
 - 기 구 : 이사회 10명(이사 8, 감사 2)
 - 기금조성 : 53억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19년 출연예정금액 : 1,000,000천원
- ‘19년 주요사업 내용
 -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: 80명, 100,000천원

□ 출연 필요성

-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, 지자체 및 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능함
- 군민들의 자발적 기탁에 의해 재원이 확충되고 있으나, 그 금액이 적어 군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
-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
- 많은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학기금 출연이 필요
- 장학금 수혜범위 대폭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필요

□ 출연근거

- 「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장학기금의 출연)

- 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연차별 기금조성 목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기조성	연 차 별 조 성 목 표					비고	
			소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	2020년
합계	8,534	3,708	4,826	564	532	530	1,100	2,100	
군 출연금	6,430	2,440	3,990	330	330	330	1,000	2,000	
기탁금등*	2,104	1,268	836	234	202	200	100	100	

※ 기투자 기탁금 등 : 설립기금, 기탁금, 이자수입 포함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, 나아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장학금 수혜범위 대폭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인구증가 기여

지방세발전기금 출연

주관부서	재무과	'19년 출연예상액	4,912천원
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 (대표 정성훈)
- 일반현황
 - 설 립 일 : 2011. 2. 28.
 - 설립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
 - 소 재 지 :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 - 조직구성 : 이사회, 기획조정실, 연구본부, 교육본부, 경영지원실
 - 운영인력 : 41명(이사장 포함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19년 출연예정금액 : 4,912천원
 -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
- 사용용도 : 인건비, 연구사업비, 경상운영비, 시설비 등

□ 출연 필요성

- 지방소비세·소득세 확대 발전, 신규세원 발굴 준비
-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,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
-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

□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법시행령

-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(법 제152조)
- 지방세발전기금은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5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(영 제94조)

□ 산출기초

구 분	예산액	산출기초
출연금	4,912천원	32,748,657천원 × 0.00015 = 4,912천원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 신세원 발굴, 지방소득·소비세 발전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
- 지방의 관점에서 경제·사회 현상을 분석·연구하여 지방재정·세제의 역할과 방향 도출에 기여
-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통하여 지방세의 비중 제고에 기여 등

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

주관부서	경제체육과	'19년 출연예상액	20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(재)강원테크노파크(원장 : 김성인)
- 일반현황
 - 설 립 : '03. 12. 24.
 - 설립근거 :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 및 「강원도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」
 - 소 재 지 :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
 - 조 직 : 3단 1본부 1센터 2실 1협력관 19팀 76명
 - 주요기능 : 지역산업정책기획, 지역혁신거점사업, 신소재·방재 기술 지원, 인력양성, 연구개발, 국제공동연구 등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19년 출연예정금액 : 200,000천원
- '19년 주요사업 내용
 -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지원 사업
 - 기업홍보 지원 사업
 -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
 -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
 -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
 - 인증 지원 사업
 - 공용장비활용 수수료 지원 사업
- ※ 지원대상 : 평창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
2019년 이내 본사 또는 공장이전이 확정된 중소기업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개선 및 마케팅 활동지원
→ 매출증대, 고용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
- 좋은 경영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- 산업통상자원부

제17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- 「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- 강원도

제4조(재원조성)

-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정부 및 강원도, 시·군의 출연금품

□ 산출기초

- 40개 중소기업 × 5,000천원 = 200,000천원

□ 기대효과

-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
- 전략산업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
-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(공익법인의 범위)

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“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·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